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7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혈액수급 차질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헌혈권장활동”, “헌혈권장” 등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나. 시장은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시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라. 시장은 주민의 헌혈자원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마. 헌혈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까지(20일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시의회문교사회전문위원실,전화032-440-6223,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의한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제4조에 의거 매년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한 홍보 및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